

## 일반 판매 및 납품 약관

본 약관에서, "판매자"란 SEW 유로드라이브코리아(주)를 의미하며, "구매자"란 판매자에게 주문을 요청하여 판매자가 그것을 수락한 고객을 의미한다. 구매자와의 모든 계약, 납품 및 용역에는 다음의 약관이 적용된다. 이 약관은 구매자와의 향후 모든 거래에도 적용된다. 는 서면으로 명확히 효력을 동의하지 않은 한 이러한 약관을 벗어나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명확히 이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납품을 유보 없이 실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매자의 약관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참조하여 구매자에게 처음 전달되고 이에 따라 이의 없이 계약 관계가 계속 진행된 시점부터 개정된 버전으로 적용된다.

### 제1조【계약의 성립】

1. "판매자"의 견적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납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사양은 서면으로 된 본 계약관련 해당 주문 확인서(Order Acknowledgement)를 기준으로 한다.
2. 발주시 "구매자"는 정확한 자료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주문 확인서(Order Acknowledgement)를 통하여 계약 물품과 용역의 사양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 계약 물품 제작 전에 "판매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주문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주문은 납품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판매자"의 계약 물품과 용역에 대한 사양서(예, 카탈로그, 전자 매체, 또는 제품 명판에 수록되어 있는 제품 정보)는 "판매자"의 일반적 기준과 보편적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권고 사항 또는 품목 표준 분류 이용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물품의 사양서 혹은 성능은 사용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과는 관련이 없다.
4. "판매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무 지원은 "구매자"가 제공한 자료와 내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5. "판매자"는 기술적 성능 개선 또는 개발 사유로 제품의 기술 데이터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 품목에 관련된 모든 특허, 도해, 도면, 계산 자료, 그리고 전자 정보 매체에 수록된 그와 유사한 유 무형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판매자"에게 있다. "판매자"가 기밀(Confidential)로 지정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한 계약 품목 관련 서류와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는 것 들을 제 3자에게 임의로 공개 및 제공할 수 없다.
7. 본 약관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 제2조【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 1호의 약관 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 제3조【발주사양 등의 지정】

1. "판매자"는 "구매자"의 발주 물품에 대하여 규격 및 사양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여 "구매자"에게 납품한다.
2. "구매자"는 제1호의 규격 및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판매자"와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제 1호의 규격 및 사양 제작 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 제품의 사후 처리는 변경을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판매자"의 제품은 주문 생산 제품이므로 "구매자"가 규격이나 사양 등을 변경 시, "판매자"가 제시한 일정(일자)을 따라야 합니다. 단,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요인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가격 및 지불 조건】

1. 가격은 수량, 규격,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검수 유무, 재료 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 경비 및 이익을 붙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1호의 가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포장방법, 운송 방법은 "판매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단가 결정의 기초가 된 제 1호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변경된 때에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5. 다른 지불 기간이 명시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한 대금 지급은 계산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불해야 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출고 전 완납 이후 출고 된다.
6. 구매 가격은 연체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각 법적 연체 이자율로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판매자"는 추가적인 연체 손해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다.
7. 구매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행 능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어음 및 수표의 인수 거절, 지불 연체, 다른 납품의 체납, 지연되는 지불 양상의 경우에 "판매자"는 "판매자"에 귀속된 권리에 따라 미지불된 청구 사항의 즉각적인 지불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적정 기간 내에 지불 또는 담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불 목적으로 양도한 어음 및 수표를 만기일과 관계없이 즉시 지불할 의무가 있다. 또한, "판매자"는 주문 확인 후 상기 명시된 상황이 "구매자"에게 서 확인된 경우 "판매자"의 서비스를 지불 또는 담보 이행 시까지 역류할 수 있다.
8. "구매자"가 지불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된 상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추가 요구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제공을 철회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추가 납품을 중지할 수 있다.

#### 제5조【납기, 납품】

1. 납기란 계약에 의하여 계약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 절차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하는 계약 물품의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 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판매자"는 제 2호의 이상 납품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자"의 납품을 지연하게 하거나, 거부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납품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검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약 물품의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7. "구매자"의 사급재를 이용하여 계약 품목이 제작되는 경우 "구매자"의 사급재 지연으로 "판매자"의 납품 지연이 발생 할 때에는 "구매자"는 사급재 공급 지연 날짜 이상의 충분한 납기를 "판매자"에게 연장해 주어야 한다.
8. "판매자"의 통제 밖의 예견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 특히 발주된 주문에 영향을 끼치는 불가항력 노동쟁의, 공장폐쇄, 수출 또는 수입 규제, 통제 밖의 혼란, 정부조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운송 지연, 기능 불량 또는 불량품에 따른 주요 부품과 원자재 납품 지연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납품 시기를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6조【하자보증 및 보수 등】

1. "판매자"는 본 계약 물품의 납품 완료 후 12개월 동안 재질 및 성능을 보장합니다. 단, 소모품일 경우 하자보증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모품의 정의 및 종류는 [www.sew-eurodrive.kr](http://www.sew-eurodrive.kr) 참조) 이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 상 결함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SEW"는 계약 물품에 대한 보수 및 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구매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와 임의로 제3의 수리업자를 통해 보수를 한 경우 "SEW"의 책임은 면제되며 자연적인 마모나 소모품 등은 유상으로

처리한다.

3.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하자 없는 제품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 제품 하자를 보수 하거나 하자 없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품 결함 해소를 수행할 시간과 기회를 승인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은 청구 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동의 하에, 직접 제품 결함을 바로 잡거나 제 3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수 할 수 있다.

4.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보증 기간이라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없다. 즉 부적절한 또는 부당한 사용, 특히 과도한 사용, 부정확한 조립, 적절한 조립 지침서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매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설치 및 운전 또는 올바르게 않거나 부주의한 조작, 적합하지 않은 운영 재료나 대체재, 불충분한 공사, 운영 지시의 부주의, 적합하지 않은 운영 조건, 특히 적합하지 않은 화학적, 육체적, 전자기적, 전기 화학적 또는 전기적 영향, 기후 또는 환경의 영향, 또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주위 온도가 이에 해당된다.

#### 제7조【재고회수 및 임의처분】

1. 대금지급이 지체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 물품 회수에 동의한다. 이때 계약 물품은 여전히 "SEW"의 소유이므로 "판매자"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2. "구매자"는 "판매자"의 계약 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판매자"는 계약물품회수를 위해 계약 물품이 있거나 있다고 추정 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동 물품 등을 회수할 수 있고 "구매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제8조【부당반품의 금지】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계약 물품을 수령 또는 인수 시,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판매자"에게 반품할 수 없다. (이하 "부당

반품")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 반품"에 해당 한다.

가) "구매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사전에 정하여 "판매자"에 고지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계약물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구매자"가 공급한 사급재 또는 대여품 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계약 물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구매자"의 사급재 공급지연으로 말미암아 "판매자"의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 제9조【권리의 양도】

1.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1.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제12조항의 경우 제외) 후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제외)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서로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 결의될 경우  
 마)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본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사) "구매자"가 계약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판매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제 1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4.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 후에,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및 손실은 “구매자”의 책임이다. 계약 물품의 제작 개시 후, 구매의 해제, 해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조립 전 일 경우 판매가의 최소 20% 조립 후 일 경우 최소 50%이상을 손해배상으로서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청구】

1.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이 약관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매자”는 “판매자”의 납품 계약 품목 및 결함 등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통하여 “SEW”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 배상 청구 범위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 외 “판매자”의 단순 계약 이행 소홀 또는 비고의적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은 “구매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로 한정합니다.
4. 손해 배상의 청구 시효는 납품 완료 후 12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 제12조【규제 및 수출 관리 규정】

1. “구매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구매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구매자”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법인이나 개인 및 해당 법인의 모든 자회사(통칭하여 이하 “계열사”라고 함)에 관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 가) “구매자” 또는 “계열사”는 (i)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s, 이하 “OFAC”이라 함)이 관리하는 제재를 포함하여 유엔, 유럽연합, 미국 또는 그 외 국가에 의해 부과된 모든 무역 또는 경제적 제재(이하 “제재”라 함)를 위반하지 않으며, (ii)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United States Commerce Department'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라 함)이 관리하는 미국 수출 관리 규정(United State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chapter VII, subchapter C (§§730-774) (이하 “미국 수출관리규정”라 함)을 위반하지 않는다.

- 나) “구매자” 또는 “계열사”는 “제재” 또는 “미국 수출관리규정”을 회피하는 거래, 회피할 목적을 가진 거래 또는 위반을 시도하는 거래에 공모 또는 가담하지 않는다.
- 다) “구매자” 또는 “계열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유되거나 지배 받지 않는다: (i) 개인이나 법인이 “OFAC”이 관리하는 미국 특별지정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특별지정국”) 명단에 포함되거나 기타 “제재” 대상인 경우 (ii) 개인이나 법인이 크림반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제재” 대상인 국가나 지역에 소재, 설립, 거주 중이거나, 개인이나 법인이 속한 정부가 “제재” 대상인 경우 (iii) 개인이나 법인이 “BIS”가 관리하는 제재 기업 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거나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

2. “구매자” 또는 “계열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유 또는 지배되고 있거나 그렇게 된 경우 “구매자”에 즉시 통지한다.

- 가) 개인이나 법인이 “특별지정국” 명단 또는 기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경우
- 나) 개인이나 법인이 “제재” 대상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 설립, 거주 중이거나, 개인이나 법인이 속한 정부가 “제재” 대상인 경우
- 다) 개인이나 법인이 “BIS”가 관리하는 제재 기업 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거나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

3. “SEW”는 “구매자” 또는 “계열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구매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혹은 위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판매자”를 면책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1. 본 약관 및 그 부수협정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양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소송관할법원】**

1. 본 약관과 관련한 민사상 소송이 발생한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 등이 적용된다.